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성 동 구 의 회 의 장

1. 신청대상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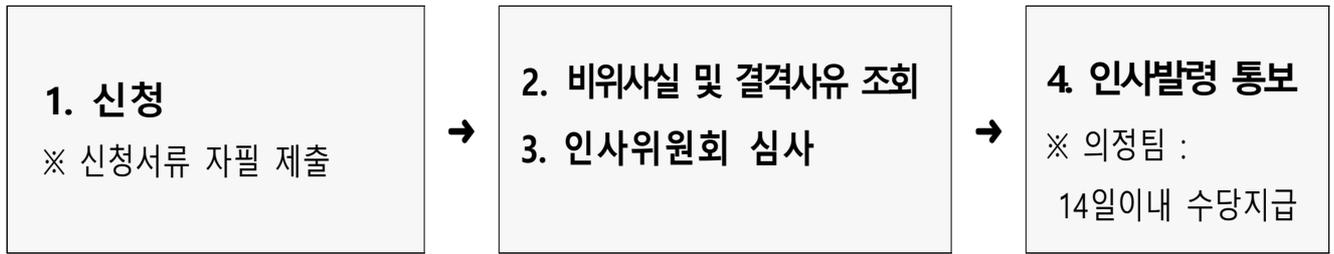
2.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구 분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비 고
정기명예퇴직	매월 말일까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수시명예퇴직	명예퇴직희망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	명예퇴직 희망일	해당자에 한함

※ 수시명예퇴직 신청 가능사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제2항)

- ☞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 된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
- ☞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
- ☞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3. 신청절차



※ 인사위원회 심사는 매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월 말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다음 월에 심사

※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퇴직자 보안 서약서」, 「명예퇴직자 협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

4. 지급대상자 결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여부 결정
-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

【 제외 대상자 】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

- 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자,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③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 ④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⑤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등

5. 수당지급

○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지급액 산정기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별표1] 참조)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 인자	퇴직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 인자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frac{\text{정년잔여월수} - 60}{2}]$
3. 10년 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월봉급액 산정기준	· 연봉제 적용대상: 연봉월액(성과연봉 제외) × 78% × 68.54% · 호봉제 적용대상: 봉급표상의 봉급액 × 68%

※ 정년잔여기간: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

6. 특별승진

○ 명예퇴직하는 대상자로서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이상 재직한 자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경력직 공무원

7. 행정사항

○ 소속 부서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퇴직자 보안서약서」, 「명예퇴직자 협약서」를 작성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 추천하여서는 아니되며,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수당지급 시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수당액 등을 재확인 후 지급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참조

붙임 명예퇴직신청 관련 서류. 끝.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기재란	①소 속				③공무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④직(계)급 (호봉)			
	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⑤성명	한 글			⑥생년월일					
		한 자			⑦주 소					
	⑧전화번호(주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구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⑬ 정년		(세, 년)			
	⑭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input type="checkbox"/> 계약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 (인)		
	⑮정년남은기간 (수량지급대상기간)		(년 월 년 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확인	인	사	당	(인)	연	금	당	(인)	
<p>「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p>										
<p>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p>										
<p>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부서의 장 (인)</p> <p>성동구의회의장 귀하</p>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작 성 요 령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 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⑫ ~ ⑰란은 해당기관의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직접 기재함
(⑭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자가 기재)
7. ⑮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 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함 다만, 월 단위이하 남은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8. ⑰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성동구의회의장 귀하

퇴직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5년 월 일자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성동구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국가안 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퇴직 후에도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한다.
-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 성명 (인)

서약집행자 : 소속 직 성명 (인)

성동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명예퇴직자 협약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위 본인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가 없음을 협약하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이후 퇴직일까지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에 신고하겠습니다.

- 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지 아니함.
- 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함.
-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함.
- 라.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지 아니함.
- 마.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은 제외)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함.
- 바.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되지 아니함.

년 월 일

명예퇴직 신청자 (인)

성동구의회의장 귀하